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규정 등 〉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30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3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30호) 1	
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31호)	4
III . 검토의견	6
1.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총괄 검토	6
가. 제정안의 개관	6
나. 입법취지와 제정 필요성	9
다. 주요 쟁점 및 종합적 검토	17
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검토의견 ..	22
가. 목적·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1조~제5조)	22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28
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안 제8조~제9조) ·	32
라.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관련(안 제10조~제18조) 36	

마. 보칙(안 제19조～제24조)	49
바. 벌칙(안 제25조～제26조)	55
사. 부칙	58
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59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6년 1월 2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30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

제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효율개선·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 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

너지 보급, 에너지요금 경감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마.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3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체계화함에 따라, 현행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

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계층인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총 5장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안 제1조~제5조)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한편, 이 법의 기본이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제7조)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 및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에너지취약계층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제3장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추진체계(안 제8조~제17조)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실시 근거 및 신청 절차와 자격관리, 민간참여 활성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장 보칙(안 제18조~제24조)에서는 부정수급의 금지 및 조사·회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위한 국가의 재정확보,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지원,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며

제5장 벌칙(안 제25조~제26조)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와 이 법 시행으로 지원이 감소하는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의 개관]

장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제3장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추진체계	제8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제9조(중앙·지방 협력체계)
	제10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제13조(통합 지원체계 구축)
	제14조(민간 참여 활성화)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보칙	제18조(청문)
	제19조(부정수급의 금지 및 조사)
	제20조(부정수급 지원금의 회수 등)
	제21조(재정 지원)
	제22조(기금을 통한 지원)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업무의 위탁)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부칙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특례) 이 법 시행으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이 급격히 상실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 완화 적용

나. 입법취지와 제정 필요성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에 따라 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5년 단전가구 촛불화재 사건 이후 에너지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본격화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함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및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해당 법률로 이관되고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책무는 「에너지법」에 존치되었으며, 2014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¹⁾되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및 저소득층에너지효

1)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을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에너지법」 상 에너지복지 사업 등 관련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사업 실시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 실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실시
제16조의3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 발급 -수급자 선정 및 자격 유지 사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등 정보 확인 근거 마련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거부 불가 -에너지이용권의 판매·대여 및 부정사용 금지
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6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제16조의7 (과징금처분)	-전담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지원사업]

구분	주요내용	2026년 예산
에너지이용권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기후민감계층*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5,171.7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내용: ①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환을 통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② 고효율 에어컨 교환을 통한 냉방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 추천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 수선유지비(주거급여) 지급 대상가구 제외	1,085.8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의 내역사업	-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교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165.7억원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의 일부 환급 지원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100억원

한편,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지원사업을 분산하여 시행하고 있음.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에 연료비 등 광열비²⁾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에 따른 긴급지원에서도 연료비³⁾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통해 주택 수선유지비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⁵⁾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지원 및 도시가스 신규보급 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용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4)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용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용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대상 기관에 대한 용자
2. 투자계정으로의 진출금
3. 용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용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타 부처 주요 에너지 지원사업]

소관	구분	주요내용	2026년 예산
보건 복지부	생계급여 (中광열비)	-내용: 의복, 음식물 및 <u>연료비</u>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9조 1,726.8억원* *생계급여 전체
	긴급복지 (中연료비)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 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의복, 음식물 및 <u>연료비</u> * 등 지원 * 연료비 1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대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대 도시 기준) 이하, (금융재산) 1인 839만원 이하	4,052.5억원* *긴급복지사업 전체
국토 교통부	주거급여 지급 (中주택개보수)	-내용: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 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 라 주택 <u>수선유지비(경/중/대보수)*</u> 지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포함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3조 2,150.5억원* *주거급여 전체
산업 통상부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용자)	-내용: ①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 지원 ②도시가스 신규보급 가구의 사용자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및 도시가스 신규보급 가구* *신규 가스 사용자 신청, 지자체 자격 요건 심사	124.4억원

또한, 한국전기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에너지 사용요금 할인, 공
급중단 유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음.

① 전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② 가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
위계층 등에 가스요금 할인, 동절기(10월~5월) 공급중단유예

- ③ 지역난방: 소형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열요금 감면

[에너지 공기업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주체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 등	월 1만6천원(하계 2만원)	한국 전력 공사
	기초생활수급자	월 1만6천원(하계 2만원)	
	차상위계층	월 8천원(하계 1만원)	
	3자녀 이상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대가족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30% 할인	
가스요금 할인	사회복지시설	산업용 요금 적용(약 16.3% 할인)	도시가스 회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절기(12~3월) 최대 7만2천원/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최대 9,900원/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동절기(12~3월) 최대 1만8천원/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최대 2,470원/월	
	다자녀가구		
열요금 감면	사회복지시설	기본요금 감면 (10,000원/월)	지역 난방 공사
	기초생활수급자	10,000원/월	
	차상위계층	5,500원/월	
	장애인 등	4,500~6,500원/월	
	다자녀가구	4,000원/월	

이처럼 현행 에너지 지원체계는 여러 부처와 에너지공급자가 각각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또

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복수의 사업으로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제도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사업 간 중복 또는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운영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⁶⁾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요금 할인, 시설·설비 개선,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등 개별 부처 단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을 법률에 근거한 통합적 지원체제로 재구성하고,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일관된 체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해외의 경우 영국에서는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법을 통해 정부에서 연료 빈곤을 겪는 자국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LTECV 법)」에 따라 에너지 복지 수단을 일원화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법」을 통해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⁷⁾.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별도의 제정법 마련이 필

6) 이성재, “국내 에너지 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2023.10., 전기저널 (<https://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

7) 이성재, 앞의 자료.

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현재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등 개별 제도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법」 중심의 에너지복지 법적 체계로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이 에너지 정책 심의 중심⁸⁾이므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음.

둘째,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확보를 위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및 중앙-지방-민간 간 연계 등의 통합적인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지원사업 수행 시 다루게 되는 개인정보의 취급 근거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8) 「에너지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주요 쟁점 및 종합적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원기관의 범위 등의 측면에서 다음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이 추진하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은 현재 다른 부처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사업들과 내용이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정책 간 연계·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연료비 및 광열비를 생계급여 또는 긴급지원의 일부로 지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의 도시가스 설비 지원 용자사업,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감면 등이 각각 시행되고 있음. 이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⁹⁾의 내용인 냉난방 환경 개선,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9) 제정안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① 지원기관등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 지급
2. 냉난방 환경 개선
3.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보급
4.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5.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6.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7. 에너지 안전 이용 환경 조성
8.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교육·홍보
9. 연료 전환 지원
10.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11.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품 보급,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과 유사한데, 에너지 지원사업 체계를 통합·일원화하려는 제정안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들과의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원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¹⁰⁾를 규정하고 있는데¹¹⁾, 에너지공급자를 지원기관에 포함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 제4조¹²⁾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할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공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재정적·제도적 책임의 주체로 명확히 설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협력적 지위에 있는 에너지공급자를 지원사업의 실시 주체로 동일하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추

10) 「에너지법」 제2조(정의)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1) 이는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전기·가스 등의 요금감면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12) 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때 에너지취약계층의 특성과 지역별 에너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에너지공급자’는 공공기관 외에도 다수의 민간 발전소¹³⁾, 민간 에너지회사, 주유소, 충전소 등 다종다양한 민간 기업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에너지공급자 전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¹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¹⁵⁾가 있음¹⁶⁾.

이에 더해 신청자가 특정 에너지공급자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모가 큰 민간 에너지공급자에게의 신청이 집중되는 등,

13) 한겨레,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소 90%가 민간… ‘공공재생에너지’ 필요한 이유”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4707.html>)

14) **제정안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지원기관등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 및 가구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납부 현황

3.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공급·이용 현황

5. 거주지의 에너지이용 설비 현황

6. 그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등은 직전 연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연도에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자동 선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자료 요청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자동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기후에너지환경정부 의견

16) 또한, 안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민간 에너지공급자도 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개인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통상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요구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이해되는 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부여하는 것이 공법상 권한 구조와 정합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자료 제공의 범위·한계, 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 주체,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여부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공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관등에 신청하고 지원기관등이 그 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실시해야 할 결정, 통지, 지원사업 수행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관등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기관등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이용의 근거와 자동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항을 지원기관등이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해당 지원을 실시할 의무규정 및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주요내용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¹⁷⁾ 발급신청(또는 직권신청) 가능
제1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시·군·구청장은 발급기준 부합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가능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시·군·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시·군·구청장은 발급 통보 후 발급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함
제12조 (이의신청)	-제11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제기 가능

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검토의견

가. 목적·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1조~제5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정적·효율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금 경감 및 비용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법의 목적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동 목적에서는 ‘모든 국민의 안정적·효율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법」과 일부 성격이 중복¹⁸⁾될 수 있으므로, 이 법의 대상인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효율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8)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빈곤”이란 가구의 소득,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에너지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라. 제7호에 따른 에너지접근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이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행하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사업을 말한다.
6. “에너지이용권”이란 에너지취약계층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냉방·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7. “에너지접근 소외지역”이란 도시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 공급이 제약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안 제2조는 에너지빈곤, 에너지취약계층 등 이 법에서 활용하는 주요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주요 지원 대상인 “에너지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일상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포섭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 범위가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보훈부는 에너지취약계층에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이와 성격이 같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접근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광범위하므로 일률적으로 ‘취약계층’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 제2조제2호라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안 제2조제7호의 “에너지접근 소외지역”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해당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접근 소외지역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방향, 지리적 접근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에너지 비용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
2.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며, 관련 법률 및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4.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인다.

안 제3조는 에너지의 효율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설계·운영하며, 중앙-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목적을 고려할 때 타당한 내용으로 보여짐.

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에너지취약계층의 특성과 지역별 에너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지원과 그 재정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에너지공급자의 협력 의무를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에 한정하는 경우 긴급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생 시 새로운 유형의 지원사업 협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협력 의무의 범위를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넓힐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에너지 지원에 관하여 일부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과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에너지법」에서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제정안의 내용과 중복되는데,

이를 삭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31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제 정 안
제6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에너지취약계층 실태조사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대상·규모 및 주요 내용 4.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에너지취약계층 시설의 확보 및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정보 제공, 교육·홍보 및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전 부처에 걸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제정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¹⁹⁾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점²⁰⁾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내용 중 ‘에너지취약계층 시설의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은 그 개념이 모호하므로 법률에 명시하기 보다는 제7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9) 제정안 제8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 정 안

제7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등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등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설계·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에너지법」에서도 2022년(시행일은 2023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2025년 시범조사를 실시한 후 2026년부터 2년 간 2만가구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가구특성	• 지역, 가구원 현황, 경제적 상황, 장애 유형, 건강 상태 등
주택특성	• 주택 형태·구조, 준공년도, 건축년도, 면적, 리모델링 여부 등
에너지소비현황	•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및 지출액 등
냉·난방현황	• 주·보조 냉·난방설비 및 연료, 실내 유지온도, 취사설비 및 연료 등
생활여건	• 집세·공과금·공교육비 연체 및 폭염·한파·단수·단전 경험 등
지원제도	• 지원제도 이용 여부, 지원금액, 만족도, 추가 필요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태조사 대상을 에너지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경우 일반 가구 대비 에너지취약계층의 규모·기준·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가구를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며, 에너지빈곤 수준이 실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안 제8조~제9조)

제 정 안
제8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후임자가 지정될 때까지 임기가 유지된다. 2. 에너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에너지취약계층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에너지·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의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차관급 위원회보다는 에너지복지 분야의 전문 정책에 관한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 별 소속 위원회 성격]

구분	성격	예시
총리급	•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지원법)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기본법)
장관급	• 해당 분야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 에너지위원회(에너지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중소기업기본법)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물류정책기본법)
차관급	•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실무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 배출권 할당위원회(배출권거래법) • 아동정책실무위원회(아동복지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 정 안

제9조(중앙·지방 협력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공유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지원 수요에 대한 협의
3.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의 발굴 및 추진 방안
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데이터·기술 지원 체계의 정비
5. 그 밖에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절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복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²¹⁾되므로 중앙-지방의 협력은 필수적인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가 제한²²⁾되며, 제

21) 취약계층 발굴, 신청·접수, 홍보, 사각지대 관리 등이 모두 행정복지센터 기반으로 이루어짐.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안의 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²³⁾된다고 보여지므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²⁴⁾.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② 전문가의 범위가 달라(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음)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협력·연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관련(안 제10조~제18조)

제 정 안

제10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이하 “지원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 지원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지원기관등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 및 가구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납부 현황
3.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공급·이용 현황
5. 거주지의 에너지이용 설비 현황
6. 그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등은 직전 연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연도에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자동 선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자료 요청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자동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원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이하 지원기관등)에게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기관등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1조는 신청을 받은 지원기관등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경로가 제한되어 있고, 경제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²⁵⁾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를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25)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직권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가 서면의 형태로만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제한된 취약계층은 동의서 제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²⁶⁾을 활용하는 등 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선제적인 지원대상자 발굴과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안에서는 안 제10조에서 지원대상이 지원기관등에 지원을 신청하고 안 제11조에서 지원기관 등이 선정을 위해 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의 지원여부 결정, 신청인에의 통지,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공급자를 지원기관등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제정안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부여한 책무의 성격과의 정

26)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합성, 민간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통제 필요성, 에너지공급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① 지원기관등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 지급 2. 냉난방 환경 개선 3.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보급 4.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5.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6.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7. 에너지 안전 이용 환경 조성 8.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교육·홍보 9. 연료 전환 지원 10.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11.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른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공급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경영상태, 시공경험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적격 여부 심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④ 지원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지원기관등이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등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환경개선 사업 시공업체의 자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최근 에너지복지 지원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문제, 폭염·한파에 따른 긴급 지원 소요, 고령화로 인한 일반적인 에너지복지 홍보 방식의 한계 등 특이 상황에 있는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복지 등기, 돌봄서비스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구분	복지 등기(11.5만 가구)	돌봄 서비스(1.05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임에도 미신청한 세대 및 수급 세대임에도 바우처 미사용 세대	-바우처 전액 미사용 또는 복지 등기 후에도 미사용한 세대, 기타 위기 세대 및 연탄사용 저소득 가구
내용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등기 대상 세대 방문, 바우처 사용 안내와 함께 안내 등기* 전달 및 실태조사** 실시 *제도 내용, 지원금액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 정보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 생활여건 조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구에 방문하여 가구별 맞춤 지원 -바우처 사각지대 세대를 방문, 미사용 사유를 조사하고 맞춤형 솔루션 제공 -보일러설계사가 연탄 가구 방문하여 연료전환 가능여부 확인 및 전환 유도
예산	(‘26년) 874백만원	(‘26년) 2,436백만원

향후 이러한 사업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 등을 통해 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안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13조(통합 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기관등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신청·상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해 일괄 공고·접수 및 통합된 현장 방문·점검 체계의 마련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관등을 위한 통합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 설명회 또는 교육의 실시 5. 지원 사업의 설계 및 개선 과정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 절차의 마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의 연계, 표준화된 자료 관리, 시스템 간 연동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에너지취약계층의 식별 및 지원 이력에 관한 정보

2. 에너지이용권의 지급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
 3.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결과에 관한 정보
 4.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보전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연계·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통합 제공체계, 일괄공고·접수, 통합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통합 설명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안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이용 시 혼선을 완화하고 사업 간 연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통합 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수급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보여짐²⁷⁾).

제 정 안
제14조(민간 참여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술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조치 2.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치 3.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조치 4. 그 밖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마우처(<https://www.energyv.or.kr/>),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관리 시스템(<https://2025.kew.or.kr/>) 등 지원사업별로 정보시스템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안 제14조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모델 마련 및 가이드라인의 보급,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의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제 정 안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에너지 또는 복지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관
 3.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 기관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지정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 정지가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 정지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법」에서도 既시행중인 내용²⁸⁾을

28)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강한 것으로, 체계적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고 보여짐.

[전담기관 개요]

구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민법 제32조
설립 목적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충
주요 기능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보급확대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에너지관리 조사·연구·홍보·교육 및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시행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효율 LED 보급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또는 에너지복지 협력사업 -에너지산업 발전·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한편, 제정안에는 전담기관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있음.

또한, 「에너지법」에서는 전담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한 반면 제정안에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전담기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전담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정안의 과징금 수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지정 기관의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주요 사례]

구분	대상	과징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저소득층에의 농식품이용권 지급업무 전담기관	1천만원 이하
환경보건법	-환경보건 관련 업무 전담기관	1천만원 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	2천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유지 인증시험 대행기관	5천만원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시험 대행기관	5천만원 이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공급인증기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 관리를 위한 관리기관	5천만원 이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하는 업무를 위해 지정된 원본증명기관	1억원 이하
계량에 관한 법률	-형식승인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형식승인기관	3억원 이하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지정인증기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지정검사기관	3억원 이하

안 제18조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조치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마. 보칙(안 제19조~제24조)

제 정 안

제19조(부정수급의 금지 및 조사) 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공급자가 자료 요청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 및 부정수급 유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정수급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지원기관등은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공급자가 부정수급액을 회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에너지요금에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회수의 대상·범위·방법 및 제재 조치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20조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의 금지 및 조사·환수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지원 제외 등 제재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²⁹⁾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한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³⁰⁾, 부정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사례가 있음.

제 정 안
제21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을 통한 지원) 정부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출연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안 제21조는 국가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지원할 수

30)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의 지원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에게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명시함으로써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수행 주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르면 에특회계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³¹⁾ 에특회계를 재원의 하나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기금 사업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에너지복지 사업이나 에너지 지원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므로³²⁾,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3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복지 사업

32)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기후대응기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구분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연도	2022년	2001년
누적 조성액	9.1조원	48.4조원
누적 사용액	8.7조원	41.7조원
용도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 정 안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3조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짐.

바. 벌칙(안 제25조~제26조)

제 정 안
제25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부과 대상, 부과 기준, 금액 산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5조에서는 ①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②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① 「개인정보보호법」³³⁾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3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관한 법률」³⁴⁾에서 개인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임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제재 수준은 적절해 보이며,

② 「에너지법」³⁵⁾ 및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과 유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³⁶⁾,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³⁷⁾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제재 수준은 큰 문제가 없어보임.

안 제26조는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에너지법」에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⁸⁾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정안과 유사한 「국민기초생활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35) 「에너지법」 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3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38) 「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

보장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³⁹⁾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수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⁴⁰⁾.

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9)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 40)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외에 정부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일반적인 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이 급격히 상실되어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이 급격히 상실되어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기존 수혜자’가 어느 법률에 따라 어떤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례가 적용되는 ‘한시적인 일정 기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특례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을 포함하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 8. ~ 10. (생략) <u>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u> <u>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삭 제>

<삭 제>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질문 및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삭 제>

<삭 제>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삭 제>

제2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평가원의 임직원은-----

-----.

<삭 제>

<삭 제>

<삭 제>

제26조(과태료) <삭 제>

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 ----- -----.

현행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⁴¹⁾, 그 일환으로 제16조의 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6개 조문에 걸쳐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 이용권 사업 등 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법」 상 에너지복지 사업 등 관련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사업 실시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 실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실시
제16조의3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 발급 -수급자 선정 및 자격 유지 사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등 정보 확인 근거 마련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 거부 불가 -에너지이용권의 판매·대여 및 부정사용 금지
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6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제16조의7 (과징금처분)	-전담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41)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지원사업]

구분	주요내용	2026년 예산
에너지바우처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기후민감계층*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5,171.7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내용: ①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② 고효율 에어컨 교체를 통한 냉방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 추천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 수선유지비(주거급여) 지급 대상가구 제외	1,085.8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의 내역사업	-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교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165.7억원

한편,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에너지빈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동 제정안에는 현행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에

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사업을 포함한 폭넓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⁴²⁾하고 있음.

개정안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법 제19조⁴³⁾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분석·관리하는 에너지 관련 통계의 범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도 함께 삭제할 필요⁴⁴⁾가 있음.

42) **제정안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① 지원기관등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 지급
2. 냉난방 환경 개선
3.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보급
4.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5.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6.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7. 에너지 안전 이용 환경 조성
8.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교육·홍보
9. 연료 전환 지원
10.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11.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른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공급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경영상태, 시공경험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적격 여부 심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④ 지원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44) 제정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안 제7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등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